

의안번호	제531호
의결 연월일	2013년 9월 일 (제323회)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봉회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8월 26일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봉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8월 26일

발 의 자 : 김봉회, 김희수, 심기보,
김형근, 임 현, 정지숙,
김종필 의원

1. 개정이유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
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
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였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</u>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<u>②</u>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 <u>③</u>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<u>제13조 ~ 제20조</u> (생 략)	<u>제14조 ~ 제21조</u> (각각 현행 제13조 ~ 제20조와 같음)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